

圖書館및讀書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
(이미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0
----------	------

발의연월일 : 2005. 6. 1.

발 의 자 : 이미경 · 노용래 · 이시종
김태홍 · 이근식 · 김정권
민병두 · 우제창 · 안민석
조경태 · 안상수 · 염동연
강기정 · 이광철 · 김영주
한명숙 · 임종석 · 박재완
정봉주 · 이상경 · 김재홍
구논회 · 노현송 · 우상호
지병문 · 백원우 · 최재성
정청래 · 강혜숙 · 유기홍
김혁규 · 우원식 · 신중식
이은영 · 신기남 · 정성호
이인영 · 문학진 · 윤원호
강길부 · 조성래 · 배일도
김재윤 · 김영춘 · 이경숙
서혜석 · 황우여 의원
(47인)

제안이유

도서관 관계법은 1963년 ‘도서관법’ 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전문, 부분개정을 거쳐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으로 개

정되었으나,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비해 현재의 법은 내용상으로 큰 변화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법체계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수차례의 개정과정에서 여러 내용들이 덧붙여지면서 내용과 형식에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옴.

‘02. 8월 확정 발표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실효적 추진을 통한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서 도서관 육성을 위해 현행 법의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도서관의 역할을 모색하며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한편 제도적 틀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동 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법 명칭에 있어 도서관의 기본활동 가운데 하나인 독서진흥을 법명에 포함시킨 것은 법체계상 불균형이라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서관기본법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칭을 ‘도서관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법률명칭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법’으로 변경함.
- 나. 법의 목적에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정보격차

- 해소 등 국가 및 사회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함(안 제1조).
- 다.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수정 및 신설함(안 제2조).
- 라. 도서관의 기능 확대와 관련 실질적인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되 ,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 동 법의 적용을 받아 지원·육성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 마. 도서관발전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 수립·추진을 의무화함(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 바. 도서관의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 사. 제3장의 명칭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가대표도서관’으로 변경함(안 제3장).
- 아. 해당 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광역대표도서관 설치 등 도서관 서비스행정의 지방분권을 지원하기 위한 장을 신설함(안 제4장).
- 자. 광역지방자치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24조).
- 차. 학교도서관의 업무에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정보공유

체제의 구축 및 이용 등을 추가하여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은 학교도서관의 기능 활성화를 유도함(안 제7장).

카. 현행법의 특수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시킴에 따라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에서 ‘전문도서관’으로 변경함(안 제8장).

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한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규정을 신설함(안 제9장).

파.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설립함(안 제45조).

圖書館및讀書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

圖書館및讀書振興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서관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③“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 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국민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 서비스를 말한다.

④“국가대표도서관”이라 함은 국가 도서관정책의 수립과 시행,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의 수집·보존·전송, 국가 서지의 작성 및 배포, 도서관에 대한 지원, 국외 도서관 등과 교류하는 일 등을 담당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⑤“광역대표도서관”이라 함은 국가 도서관정책의 시행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 내 도서관 설립·운영 및 협력체계의 구축·지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표도서관을 말한다.

⑥“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설립한 도서관이나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의 비영리 독서시설인 “문고”

2.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3.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4.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5.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6.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 ⑦“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⑧“학교도서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⑨“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⑩“납본”이라 함은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서직원 등) ①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서 구분하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도서관의 이용·제공 등) ①도서관은 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9조(금전 등의 기부)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이 아니면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12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고 한다)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 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다.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역점 추진과제 및 관계 부처 등 협조에 관한 사항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원의 조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사업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청소년기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 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세부내용과 지원의 범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①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도서관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및 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조정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도서관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도서관위원회에 도서관정책 실무회의(이하“실무회의”라 한다)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⑦도서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설립)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국가대표도서관

제18조(설치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②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③국립중앙도서관에 관장 1인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④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 도서관정책의 수립과 시행
2. 국내외 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발전 및 독서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8.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②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료의 납본) ①「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2조제2항의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규정한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이나 단체가 제2조제2항의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국립중앙도서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자료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납본대상 자료의 종류·부수와 그 절차 및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광역대표도서관

제22조(설치) ①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지역의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지역의 공공도서관 자료수집 및 보존 지원
5. 국가대표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도는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지방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방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도서관정책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방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광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지방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운영비의 보조)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자료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이나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2부를 관할 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출대상 자료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공공도서관

제27조(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공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해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

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운영위원회)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

하여야 한다.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사용료)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립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대학도서관

제34조(설치)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 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 대학도서관은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과 교직원 등의 지식정보 함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2. 효율적 교육 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
3.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6조(지도·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 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 대학의 지도·감독이나 교육기관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학교도서관

제37조(설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업무)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 시청각 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9조(지도·감독) 학교도서관은 「초·중등교육법」 과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8장 전문도서관

제40조(등록 및 폐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법인, 단체 및 개인이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1조(업무)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술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3. 다른 도서관과 자료를 공유하는 일을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4.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2조(준용) 제32조의 규정은 제40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도서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제43조(도서관의 책무) ①도서관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자료,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 ①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

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학습교재·이용설명서 등의 제작·배포
4.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6.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장애인에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독서진흥

제4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독서자료 등의 확보를 위한 산업체 및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조

3. 그 밖에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7조(독서교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제외한 각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독서관련 교과용도서의 편찬·발행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8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국가는 국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진흥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독서의 달’의 설정과 독서관련 행사, 포상 및 표창,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학교 등의 독서진흥 활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직장에 소속된 학생 또는 직원 등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

교·직장에 독서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장 보 칙

제50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협회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독서진흥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과태료)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해당 자료정가(그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간행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고 된 도서관 및 문고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도서관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다만, “새마을문고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한다.

제4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등의 행정기관이 행한 등록, 그 밖의 행정기관

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圖書館및讀書振興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②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 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③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도서관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예 산 명 세 서

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가. 예산수반요인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둔다.(안 제15조제1항)

나. 비용추계 기본전제

- 위원 수 : 15인 이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비 상설 기구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에 대한 회의수당 및 간담회 경비만 필요

다. 비용추계결과

소요예산 : 4,000,000원

○ 연 2회×10명×200,000원=4,000,000원

2. 도서관연구소

가. 예산수반요인

도서관발전 및 독서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연구소를 둔다.(안 제19조제2항)

나. 비용추계 기본전제

- 설치 : 영역별 4개 정도 팀으로 구성
 - 연구소장
 - 팀장(선임연구위원,4명), 책임연구원(4명), 기타 연구원(4명)
 - 연구지원 인력 : 정부부처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활용
- 재정 : 정부예산, 연구용역수입, 보조금 등

다. 비용추계결과

1차년도 소요예산 : 856,000천원

- 인건비 : 76,000,000×1명=76,000천원
48,000,000×4명=192,000천원
35,000,000×4명=140,000천원
27,000,000×4명=108,000천원
- 연구소운영경상수용비:20,000천원
- 연구소 비품(자산취득):200,000천원
- 기타 자문회의 수당 등:100,000천원
- 국내·외 여비 :20,000천원

※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추후 상세 검토 필요(대통령령)

3.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가. 예산수반요인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둔다.(안 제45조제1항)

나. 비용추계 기본전제

- 설치 :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국립디지털도서관 내에 본부를 둠
- 시스템 및 연구지원 부분은 국립중앙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 및 도서관연구소의 지원을 받음

다. 비용추계결과

1차년도 소요예산 : 2,286,000천원

- 인건비: 400,000천원(정원8명 과 조직)
- 시스템 구축 : 316,000천원
- 해외협력(여비포함) : 220,000천원
- 센터 비품(자산취득) : 300,000천원
- 업무용 차량(승합차) : 30,000천원
- 센터운영경상수용비 : 20,000천원
- 점자도서관지원 등 사업비:1,000,000천원
- 출판 : 기존 점자도서관 시설 활용

※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추후 상세 검토 필요(대통령령)